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1. 귀 단체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관련 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 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의2호(개정일 : 2017. 8. 9, 시행일 : 18. 2. 10)

붙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관련 법 조문. 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과장 이명한 처장 전결 2022. 1. 27. 김행섭

협조자

시행 교통안전처-610 (2022. 1. 27.)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울곡동한국 / www.kotsa.or.kr
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 054-459-7277 팩스번호 0502-384-5420 / mhlee@kotsa.or.kr / 대국민 공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93조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2021. 4. 13.>

1. 제9조 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 제1항 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⑤<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8. 12. 31.>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처 분 내 용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자격 취소